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12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융복합혁신교육특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교육발전을 위하여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지정, 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2. "규제특례"란 규제를 완화시키거나 권한을 이양하는 것으로서 법 제3장에 규정된 규제특례 사항을 말한다.
3. "특화사업"이란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계획(이하 "특구계획"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특화사업의 범위) 특화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통문화 재창조를 통한 전통역사체험사업
2. 휴(休)문화의 글로벌 명소화를 통한 생태문화체험사업
3. 공교육 강화를 통한 미래인재육성사업
4. 평생학습 활성화를 통한 글로벌시민역량강화사업
5. 그 밖에 융복합혁신교육특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다만, 중

소기업청장의 승인을 얻은 사업에 한한다.

제4조(대외적 표시) 특구의 대외적 표시는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The Seongdong Convergence & Innovation Edu-Zone)"로 한다.

제5조(규제 특례사항) ①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특화사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사증(査證) 발급 관련 고용추천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도로교통법」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2조에 따라 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특구지역 내의 도로에 차와 우마의 도로통행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화사업기간 동안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사람에게 특구지역의 도로점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특구계획에 반영된 특구 및 특화사업의 효과적인 홍보를 위한 시설의 광고물에 대하여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2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제6조를 준용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구청장은 특화사업 추진계획 및 결정·집행 등의 과정에서 전문가 및 구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성동 융복합혁신교육특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단,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가 그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효율적인 특구운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특화사업 추진계획 및 운영에 관한 자문
2. 특구의 홍보 및 특구발전 방향 제시
3. 특구지역 내 지역주민 등의 의견조정
4. 그 밖에 특화사업 관련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8조(재원조달 등) ① 특화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재원은 국비, 시비, 구비 및 민간부담금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특화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수강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하여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일부사업에 대하여는 구민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무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평생교육 진흥 조례」, 「서울특별시 성동구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